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9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조인철 · 이정현 · 정준호
문진석 · 안도걸 · 박균택
어기구 · 이건태 · 양부남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 · 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특히, 향후 3년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G3)’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역별 균형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전력직접공급 특례) ①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역별 균형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거래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 소재한 발전사업자일 것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동일 또는 연접한 권역 내에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위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의 승인, 전력공급 방안의 세부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은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u><신 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u>제25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u> <u>의 지역별 균형 구축 활성화를</u> <u>위한 전력직접공급 특례) ①</u> <u>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u> <u>지역별 균형 구축을 활성화하</u> <u>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u> <u>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u> <u>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다</u> <u>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u> <u>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u> <u>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u> <u>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u> <u>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을 승</u> <u>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거</u> <u>래의 조건 및 방식에 대하여는</u> <u>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u> <u>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u> <u>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u> <u>있다.</u> <u>1. 비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u>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 소
재한 발전사업자일 것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위치
한 동일 또는 연접한 권역 내
에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위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의
승인, 전력공급 방안의 세부사
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은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
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